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6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서범수 · 김소희 · 이현승
박충권 · 김종민 · 김장겸
고동진 · 박덕흠 · 이달희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둬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방첩(防諜)활동”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첩활동) ① 경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의 범위와 처리 기준, 대응 활동의 종류·절차·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2항 및”을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예방활동”을 “예방 및 방첩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의2. (생 략) 3. 경비, <u>주요 인사(人士) 경호</u> <u>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u> 4.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직무의 범위)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u>주요 인사(人士) 경</u> <u>호, 대간첩 · 대테러 작전 및</u> <u>방첩(防諜)활동</u> ----- 4. ~ 7.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방첩활동) ① 경찰관은</u> <u>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u> <u>국 및 외국인 · 외국단체 · 초국</u> <u>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u> <u>내국인의 정보활동을 확인 · 건</u> <u>제 · 차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u> <u>집 · 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u> <u>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u> <u>②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u> <u>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u> <u>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u> <u>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u> <u>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u> <u>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u> <u>할 수 있다.</u>

있다. 1. · 2. (생략) 3. 테러범죄의 <u>예방활동</u>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생략) ② ~ ⑦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u>예방 및 방첩활동</u>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